

## 22.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개정령

대통령령 제15,976호 1998. 12. 31

### 개정이유

조세지원제도별로 적용시한을 설정하는 등 조세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기업구조조정 촉진과 성장잠재력 배양을 위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문개정(1998. 12. 28, 법률 제5584호)됨에 따라,

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를 정비하고, 벤처기업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,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# 주요골자

- 가. 기술개발준비금 및 기술·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업종에 텔레비전방송업·라디오방송업, 패션디자인업, 포장 및 충전업 등을 추가함(령 제8조 및 제9조).
- 나.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대상을 창업후 3년이내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것으로서 출자후 5년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것으로 함(령 제12조).
- 다.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

에 종업원외에 당해 벤처기업의 경영에 기여한 교수, 연구원 등을 추가함(령 제13조).

- 라.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취득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소득을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함(령 제18조).
- 마. 투자금액의 5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받는 중고설비투자세액 공제제도의 대상 자산을 기계장치 등 사업용자산으로 정하되,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또는 사업 양수도 방식에 의한 거래는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여 동제도의 납용을 방지하도록 함(령 제24조).
- 바. 부동산을 양도하여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부채의 범위에 차입금의 이자 및 금융기관이 보증한 회사채를 추가하고, 대상 부동산의 범위에 비업무용 부동산도 포함되도록 함(령 제33조 및 제34조).
- 사.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채무(부채)기업이 5년이내에 부채비율을 200퍼센트이 하로 낮출 수 있는 등 재무구조개선가능성과 흑자전환 등 희생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개선계획을 승인하도록 하고, 기업개선계획에는 부채상환, 상호 지급보증해소 등 재무구조개선계획과 보유자산 매각, 인력 감축등의 자구계획이 포함되도록 함(령 제42조).
- 아.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에 의한 대손충당금의 손비 인정대상 금융기관에 은행외에 종합금융회사, 상호신용금고, 증권회사, 보험사업자 등을 추가함(령 제46조).
- 자. 임여식품활용사업자에게 임여식품을 증여하는 경우 그 장부가액의 손금편입을 협용하는 법인을 음료식품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정함(령 제104조).
- 차.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구입시에 구입금액의 10퍼센트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의 적용대상에 도·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추가함(령 제121조).
- 카. 정보시스템 등이 1900년대와 2000년대를 구별하지 못하는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을 기술·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(령 별표 6).